

## 속초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발의년월일 : 1994. 7. .

발 의 자 : 최창영의원외 3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4. 3. 16, 법률제4741호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'94. 7. 6, 대통령령제14317호)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등 현행 회의규칙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의석배정, 개의, 의사일정의 작성·변경, 경호, 명백하지 않은 안건 회부등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역할을 구체화 함.  
(안 제3조, 안 제13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, 안 제20조, 안 제73조)
- 나.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상임위원회 회부절차를 명시함 (안 제20조)
- 다. 청가 및 결석, 회의록 발간 및 공청회 운영, 본회의장 출입, 녹음·녹화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정으로 정함.  
(안 제7조, 안 제48조, 안 제56조, 안 제75조, 안 제81조)

라.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음.

(안 제20조의3)

마.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, 위원회간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석회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간의 상호갈등에 대한 조정 규정을 둠 (안 제51조의2, 안 제55조의2)

바. 예산·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토록 심사규정을 둠. (안 제61조, 안 제65조)

## 속초시의회규칙 제 호

###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의석배정)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

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

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청가 및 결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

제13조, 제17조중 “의장이”를 “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”로 한다.

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20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제20조의2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특별위원회 회부)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0조의3(심사기간)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20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안건심의)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

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48조에 제1항중 "발언자"를 "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"로 하고,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회의록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

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0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최)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2(위원회의 제안)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연석회의)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제5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

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1조 (예산안 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5조 (결산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
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66조 제3항중 “출석할 수 없는”을 “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”로 한다.

제73조 제1항중 “필요한 때에는”을 “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”로 하고, “의장은”을 “의장이 단독으로”로 한다.

제7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

제8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녹음·녹화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 10 장 보 칙

제87조(규칙 및 규정 제정) 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             | 정     |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의석배정)      | <u>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u>             | 제3조(의석배정)      | ①     | <u>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</u> |
| 제7조(청가 및 결석)   | ① - ⑥ (생략)<br>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청가 및 결석)   | ① - ⑥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3조(개의)       |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<u>의장이</u> 그 개의 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3조(개의)       | ⑦     | <u>청가 및 결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| ① (생략)<br>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| ①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|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<u>의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| 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| ②     | <u>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u>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| ③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|       | ..... 의장이 의회운영회와 협의하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| 정 | 안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<br>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<br>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.....<br>.....<br>..... |
| 제20조 (의안의 회부) ① <u>의장은 의안이 발의<br/>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<br/>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<br/>의에서 심사·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br><u>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<br/>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<br/>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<br/>한다)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.</u><br>② <u>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<br/>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<br/>있다.</u><br><br>③ <u>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<br/>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꼭 필<br/>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<br/>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br><br>④ <u>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<br/>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위원회가 이<br/>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<br/>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<br/>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<br/>부의할 수 있다.</u> | 제20조 (상임위원회 회부) ① <u>의장은 의안이<br/>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<br/>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<br/>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<br/>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<br/>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<br/>회부할 수 있다.</u><br><br>② <u>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<br/>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<br/>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<br/>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<br/>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/u><br><br>(삭 제)<br><br><br>(삭 제)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| 정 |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<p>③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<br/>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<br/>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<br/>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 |   |   | <p>(삭 제)</p> <p>제20조의2(특별위원회 회부) ①의원의 동의<br/>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br/>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<br/>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<br/>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<br/>회부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의3(심사기간) ①의장은 심사기간을<br/>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<br/>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<br/>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<br/>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<br/>다.</p> <p>제20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<br/>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<br/>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<br/>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<br/>있다.</p> |
| 제25조(안건심의) | <p>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<br/>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<br/>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<p>제25조(안건심의)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<br/>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<br/>심사보고를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 | 행 | 개 | 정 |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|   |   |   | <p><u>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<u>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제50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최) <u>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|   |   | <p>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의2(재회부) <u>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8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회의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제50조(본회의중 위원회 개최) <u>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|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   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|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 설) | 제51조의2(위원회의 제안)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 설) |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 설) | 제55조의2(연석회의)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제56조(공청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제56조(공청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① ~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 설) | ⑤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① ~ 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 설) | ④소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제61조(예산안 심의)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 |       | 제61조(예산안의 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|   |   |

| 현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| 안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 | 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장에게 보고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이하 '예결위원회'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그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|   |   |
| 제65조 (결산의 심사)    |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. | 제65조 (결산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제66조 (시장등의 출석요구) | ① - ② (생략)<br>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6조 (시장등의 출석요구)<br>① - ②(현행과 같음)<br>③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
| 현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| 변 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<u>출석할 수 없는</u>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,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|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... <u>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</u> .....              |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제73조(경호)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<u>필요한 때에는</u>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<u>의장은</u>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. | 제73조(경호) ①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... <u>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</u> .....   |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②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.... <u>의장이 단독으로</u> .....                 |
|   | 제75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5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<u>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</u> |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제81조(녹음, 녹화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1조(녹음, 녹화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-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<u>녹음, 녹화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.</u> |
|   | ① -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-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(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10 장 보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7조(규칙 및 규정제정) <u>의회는</u>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